

## 사회보험, 노동보험 등

###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병, 부상, 신체의 장애, 사망, 노령, 실업등이 일어 났을때, 보험제도 가입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보험급부를 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사회보험」과「노동보험」으로 분류되며 후생노동성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에는 의료보험(피용자보험, 국민건강보험, 등)과 개호보험, 연금보험(후생연금보험,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노동보험」에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노재)과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노재보험)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경우나 과로사, 과로에 수반되는 자살, 통근 도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요양보상급부」「휴업보상급부」「상해보상급부」등 각종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문의는 근무지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처 효고노동국 감독과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대응언어:중국어) 0570-001-702

히메지노동기준감독서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대응언어:베트남어) 079-224-8181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검색(다국어 대응)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html>

니시노미야노동기준감독서 0798-26-3733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실업급부」를 지급하여 재취직할 때까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피보험자자격

원칙적으로 한사람이라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험료는 노동자, 사용자 모두 부담합니다.

재류자격이 영주자, 일본인배우자, 정주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도 대상이 됩니다. 고용기간이 짧은 사람, 고용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귀국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기간이 실업하기 전의 2년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인 것, 재취직 의지와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 공공직업안정소>Hello work 니시노미야) 0798-22-8600

## ○의료보험

노동자나 그 가족이 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필요한 의료급부나 수당금 등을 지급하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

다른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시구정촌 사무소에 납부합니다. 또한 75 세 이상인 사람 및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고 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65 세 이상인 사람은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는 개인 단위로 시구정촌 사무소에 납부합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국민건강보험과 0798-35-3117  
니시노미야시청 고령자의료보험과 0798-35-3192

## ○후생연금보험

회사, 공장,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가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동자의 노후 생활 보장이 주된 목적이나 부상이나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된 사람들의 생활이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연금다이얼 0570-05-1165  
050 전화로 걸 경우 03-6700-1165

모든 법인 사업소는 반드시 이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임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는 근무지 주소를 관할하는 연금사무소로)

문의처 니시노미야 연금사무소 0798-33-2944

자영업, 농림수산업종사자, 학생, 무직인 사람 등,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연금에 대해서 니시노미야시청 의료연금그룹 0798-35-3124

## ○탈퇴일시금 지급제도 및 사회보장협정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탈퇴일시금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일본체재중에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6 개월치 이상 납부한 경우 귀국후 2 년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귀국전에「탈퇴일시금 청구서」를 연금사무소 등에서 입수하여 귀국후 그 청구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다음, 첨부서류와 같이 일본의 일본연금기구로 보내어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일본에서의 연금가입기간과 본국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각 나라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을 받은 경우 탈퇴일시금 계산의 기초가 된 기간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연금다이얼 0570-05-1165

050 전화로 전화할 경우 : 03-6700-1165

※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